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왕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67

발의연월일: 2025. 4. 23.

발 의 자:서왕진·정춘생·황운하

임호선 · 김준형 · 김선민

차규근 • 박은정 • 강경숙

신장식 • 이해민 • 백선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·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따라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출원공개를 보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경제 및 산업 안보 강화를 위해 군사적 기술뿐 아니라 경제·산업적 중요 기술까지 비밀특허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전략기술 유출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국방상 필요한 발명으로 비밀특허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, 반도체·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보호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을 비밀취급하거나 외국 출 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 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등).

법률 제 호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 본문 중 "국방상 필요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발명이 국방상 필요한"을 "발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"으로, "전시"를 "제1호의 경우에는 전시"로 한다.

- 1. 국방상 필요한 경우
- 2.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안보 및 경제적·산업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특허출원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비밀취급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한 발명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

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)	제41조(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)
① 정부는 <u>국방상 필요한</u> 경우	① <u>다음 각 호의 어느</u>
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	<u>하나에 해당하는</u>
지하거나 발명자・출원인 및	
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	
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	
수 있다. 다만, 정부의 허가를	
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	
원을 할 수 있다.	
<u><신 설></u>	1. 국방상 필요한 경우
<u><신 설></u>	2.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안보
	및 경제적·산업적 중요성이
	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기술을 특허출원
	하는 경우
② 정부는 특허출원된 <u>발명이</u>	② <u>발명이</u>
<u>국방상 필요한</u> 경우에는 특허	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전	<u>당하는</u>
<u>시</u> 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	<u>제1호의 경</u>
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	<u>우에는 전시</u>
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	
를 수용할 수 있다.	

 ③ ~ ⑦ (생 략)
 ③ ~ ⑦ (현행과 같음)